

보도일시

2021. 9. 5.(일)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소득 지원 국 장려세제운영과
 배포 일시: 2021년 9월 5일

담당과장	이준희 과 장	(044)204-3801
담당자	고병재 사무관	(044)204-3812
	손혜림 사무관	(044)204-3817
	안형민 사무관	(044)204-3822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힘으로』 서민의 희망 근로장려금

- ('17년 귀속 대비 '20년 귀속) 지급가구 1.8배, 지급금액 2.8배 증가 -
 - 반기지급 제도 도입으로 지급 시점을 평균 164일 단축 -

- '06년 근로·자녀장려세제 도입 이후 지속적인 제도 개편을 통해 지급가구와 지급금액 모두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 특히, 「대상은 넓게, 혜택은 크게, 지급은 빠르게」 라는 개편 방향하에 '18년 세법개정을 통해 '19년 신청분('18년 귀속분) 부터 장려금 지급가구와 지급금액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청년세대 지원을 위한 연령제한 폐지, 소득·재산기준 완화 및 최대 지급액 상향 등으로 지급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 반기지급 제도를 도입,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의 시차를 평균 164일 단축하여 근로유인 효과를 높였습니다.
- 그 결과, '20년 귀속 총 지급규모는 505만 가구, 5조 1,342억 원으로 '17년 귀속 대비 지급가구는 232만 가구(85.0%), 지급금액은 3조 3,044억 원(180.6%) 증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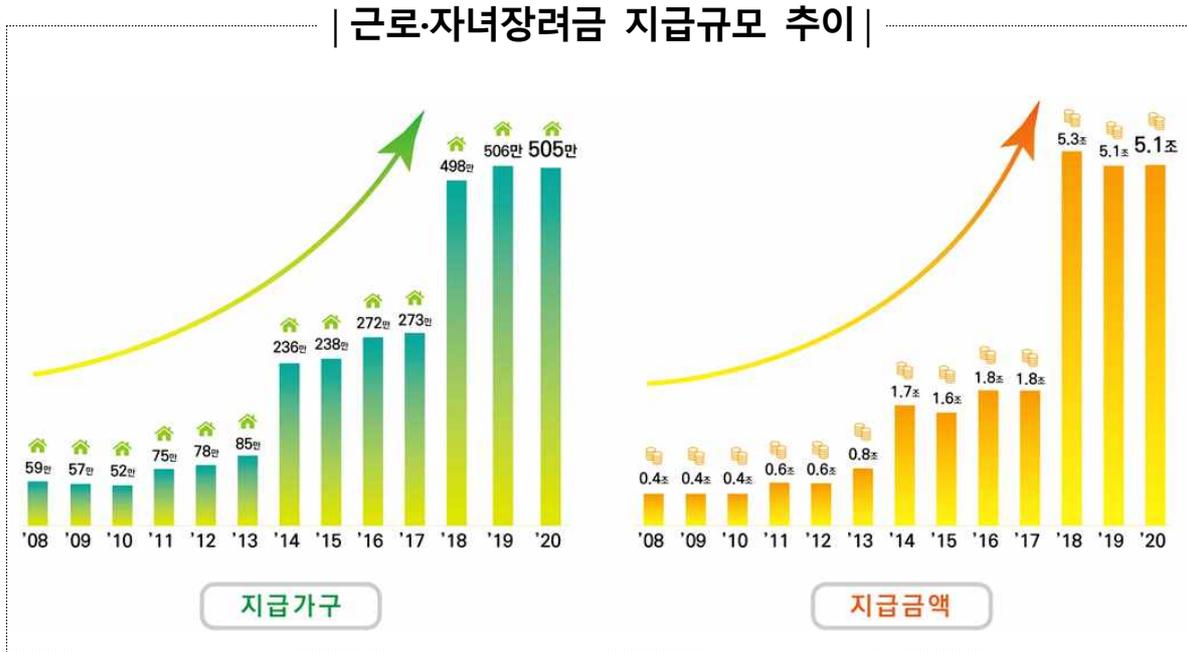
'17년 귀속	273만 가구	1조 8,298억 원
'20년 귀속	505만 가구 (85.0% ↑)	5조 1,342억 원 (180.6% ↑)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보다 빠르게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대량지급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여 올해 최초로 모든 수급자에게 하루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근로·자녀장려금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

지급가구와 지급금액 모두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 제도도입 이후 연령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급대상을 늘려 왔습니다.



※ 처음 지급한 '08년(귀속) 대비 지급가구는 8.5배, 지급금액은 11.4배로 증가

☐ 특히, '18년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으로 '19년도 ('18년 귀속분)부터 지급대상과 금액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단독 가구 연령제한(30세 이상) 폐지
- 근로장려금 소득·재산기준 완화 및 최대 지급액 상향

구 분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13 → 20백만 원	21 → 30백만 원	25 → 36백만 원
최대지급액	85 → 150만 원	200 → 260만 원	250 → 300만 원
재산기준	1.4 → 2억 원 미만		

-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상향(부양자녀 1인당 50 → 70만 원)
-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연 2회 반기별 신청·지급 추가

- ① (대상은 넓게) 30세 미만 청년층도 받을 수 있도록 단독 가구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소득·재산기준 또한 완화하였습니다.
 - (소득기준) 단독 가구는 2천만 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맞벌이 가구는 3천 6백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 (재산기준) 1.4억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완화하였습니다.
- ② (혜택은 크게)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단독 가구는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으로 상향하고
 -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7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 ③ (지급은 빠르게) 신속한 지원을 위해 근로소득자에 한해 연 2회 신청하고 지급하는 반기지급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금년 세법개정(안)에서도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현재 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향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 소득기준(상한 만 원): 단독 2,000 → 2,200, 홑벌이 3,000 → 3,200, 맞벌이 3,600 → 3,800

|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개요 |

-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과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에 따라 지급액을 산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로 '06년 도입하여 '09년('08년 귀속분)부터 지급하였으며,
 - 자녀장려금은 '15년부터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부양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제도확대에 따른 지급규모 증가

| '17년 귀속 대비 '20년 귀속 증감 현황 |

구 분	합 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 구	85.0% ↑	141.9% ↑	23.4% ↓
	232만 가구 ↑	254만 가구 ↑	22만 가구 ↓
금 액	180.6% ↑	237.8% ↑	24.9% ↑
	33,044억 원 ↑	31,818억 원 ↑	1,226억 원 ↑

- '20년 귀속 총 지급규모*는 505만 가구, 5조 1,342억 원으로 '17년 귀속 대비 지급가구는 232만 가구(85.0%), 지급금액은 3조 3,044억 원(180.6%) 증가하였습니다.

* '20년 귀속 기한 후 신청분 지급 예상 18만 가구, 1천억 원 포함

- 근로장려금은 254만 가구(141.9%), 3조 1,818억 원(237.8%) 증가한 반면, 자녀장려금은 출산률 하락의 영향으로 22만 가구(23.4%) 감소하였습니다.

| 최근 4년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

(만 가구,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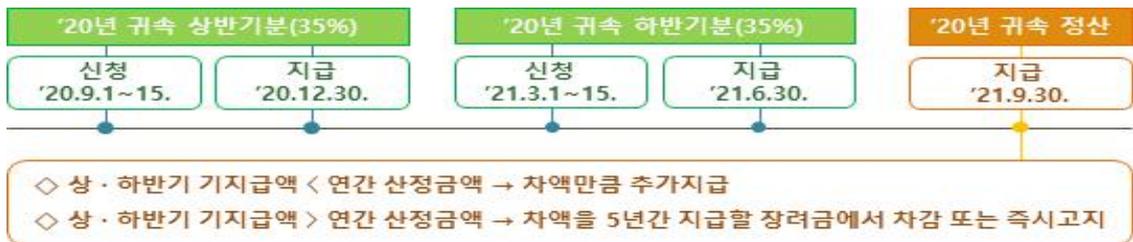
귀속	합 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 구	금 액	가 구	금 액	가 구	금 액
'17년	273	18,298	179	13,381	94	4,917
'18년	498	52,592	410	45,049	88	7,543
'19년	506	51,140	432	44,683	74	6,457
'20년	505	51,342	433	45,199	72	6,143

Ⅱ 소득발생 시점과 지급 시점의 시차를 단축하였습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도입

- 근로소득자의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여 적기에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19년 귀속분부터 도입하였습니다.
-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연간 장려금 추정액의 35%씩을 상·하반기 두 차례 나누어 지급하고,
- 9월에 연간 산정액과 이미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추가지급 또는 향후 5년간 차감)하게 됩니다.

| '20년 귀속분 반기지급(예시) |



2. 지급시차 단축

- 반기지급 제도의 도입으로 소득발생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시차는 정기분 대비 평균 164일 단축되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이 조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반기지급 제도의 시차단축 현황 |

귀속	정기지급 완료일	반기지급 완료일	
		상반기분	하반기분
'19년	'20. 8. 28.	254일 '19. 12. 18.	70일 '20. 6. 19.
'20년	'21. 8. 26.	259일 '20. 12. 10.	72일 '21. 6. 15.

Ⅲ 신청 후 지금까지의 기간 또한 대폭 단축하였습니다.

1. 신속한 심사업무 집행

□ (조기지급 추진)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법정기한(9. 30.)보다 조기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특히,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최대한 빨리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 추진 현황|

귀속(정기분)	법정 지급기한	지급완료일	단축일수
'18년	'19. 9. 30.	'19. 9. 6.	24일
'19년	'20. 10. 1.	'20. 8. 28.	34일
'20년	'21. 9. 30.	'21. 8. 26.	35일

2. 대량지급시스템 구축

□ (지급시스템 개발) 대량의 장려금을 빠르게 지급하기 위해 장려금만 별도로 지급하는 대량지급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여 일일 송금건수를 확대(60만 건 → 500만 건)하였습니다.

- (일괄지급) '20년 귀속 정기 신청 및 반기 정산분 지급 시, 올해 처음으로 모든 지급 대상자에게 하루에 일괄 지급하였습니다.

* '19년 귀속 이전에는 최소 3일 ~ 최대 10일 소요되었음

|연도별 지급건수 및 소요기간|

귀속(정기분)	지급건수	소요기간	일일 지급가능건수
'18년	473만 건	10일	60만 건
'19년	457만 건	3일	500만 건
'20년	468만 건	1일	500만 건

IV

「제도를 몰라서, 신청방법이 어려워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세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급대상자가 생활 속에서 쉽게 장려금 제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 전통시장 등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홍보*를 진행하고 청년층을 위해 온라인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현장홍보를 생략하고 비대면 안내 진행
 - 특히, 그 동안 안내가 미흡했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제도 안내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을 실시하여 사내 게시판에 카드뉴스와 신청일정 등을 공지
- ② 취업난으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청년층을 위하여 주요 구인·구직 사이트에 장려금 제도 안내를 위한 배너 게시

- 지급대상자가 장려금을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자동 응답·손택스·홈택스 등 신청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하여 도움창구를 운영하고 신청도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① 기존의 모바일 안내문은 단순히 신청정보만 제공하였으나, 모바일 안내문 화면에서 바로 장려금 신청도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선
- ② 서면 안내문의 정보무늬를 저장하면,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 후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만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

V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버팀목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미담 사례

<사례 #1> 근로장려금을 전세보증금 마련에 사용한 사례

◇ 가정폭력으로 이혼 후 복지시설에 거주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였으나, 복지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될 무렵 임대 아파트를 신청하게 되었고 지급받은 장려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납부

<사례 #2> 근로장려금을 치매에 걸린 배우자의 병원비로 사용한 사례

◇ 치매에 걸린 배우자 병간호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음. 치료비와 약값이 비싸 월급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되어 의료비로 요긴하게 사용

<사례 #3> 근로장려금을 밀린 공과금 납부 등 생활비로 사용한 사례

◇ 이혼 후 홀로 어린아이를 돌보다 실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던 중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으로 밀린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었고, 현재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를 통해 일을 하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음

<사례 #4> 근로장려금을 월세 납부 등 주거비로 사용한 사례

◇ 어렵게 첫 직장을 구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무급 휴직에 들어간 상태에서 월세 등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중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으로 월세와 생활비에 충당

□ 장려금 제도 효과 설문조사 결과

○ (근로유인 효과) 근로장려금이 구직활동, 일할 의욕 등을 고취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년 설문) 효과 있음 77.0%, 보통 17.4%

○ (가계소득 기여)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년 설문) 효과 있음 78.1%, 보통 17.4%

- 참고 1.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연혁
2.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4.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개요
5. 근로·자녀장려금 대량지급시스템

참고 1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연혁

연도	제도 변경 내용
'06년	◇ 근로장려세제 도입(조세특례제한법 국회 통과, '06. 12. 26.) * 1년 유예 후 '09년 실시('08년 귀속 소득으로 '09년 지급)
'07년	◇ 국세청 전담부서 신설(근로소득지원국)
'08년	◇ 일선 세무서 조직 신설(소득지원과) 및 지급 준비
'09년	◇ 근로장려금 최초 신청 및 지급
'12년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대 * 근로소득자 외에도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추가
'13년	◇ 60세 이상 단독 가구에게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부여
'14년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제도 도입
'15년	◇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제도 도입 ◇ 자녀장려금 최초 지급
'16년	◇ 단독 가구 신청요건을 60세 → 50세 이상으로 하향
'17년	◇ 단독 가구 신청요건을 50세 → 40세 이상으로 하향
'18년	◇ 단독 가구 신청요건을 40세 → 30세 이상으로 하향
'19년	◇ 소득·재산기준 완화, 단독 가구 연령제한 폐지 ◇ 근로·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상향 ◇ 근로소득자 반기지급(연 2회) 제도 신설

참고 2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만 가구, 억 원)

귀속	구분	합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소계	정기	반기	기한후	소계	정기	기한후
'08년	가구	59	59	59					
	금액	4,537	4,537	4,537					
'09년	가구	57	57	57					
	금액	4,369	4,369	4,369					
'10년	가구	52	52	52					
	금액	4,020	4,020	4,020					
'11년	가구	75	75	75					
	금액	6,140	6,140	6,140					
'12년	가구	78	78	78					
	금액	5,618	5,618	5,618					
'13년	가구	85	85	85					
	금액	7,745	7,745	7,745					
'14년	가구	236	128	118		10	108	100	8
	금액	17,144	10,565	9,760		805	6,579	6,085	494
'15년	가구	238	144	135		9	94	92	2
	금액	16,274	10,574	10,037		537	5,700	5,491	209
'16년	가구	272	166	157		9	106	103	3
	금액	17,604	11,967	11,416		551	5,637	5,428	209
'17년	가구	273	179	170		9	94	90	4
	금액	18,298	13,381	12,808		573	4,917	4,729	188
'18년	가구	498	410	388		22	88	85	3
	금액	52,592	45,049	43,003		2,046	7,543	7,273	270
'19년	가구	506	432	249	169	14	74	73	1
	금액	51,140	44,683	24,489	18,969	1,225	6,457	6,266	191
'20년	가구	505	433	267	151	15	72	69	3
	금액	51,342	45,199	26,590	17,328	1,281	6,143	5,927	216

*  : '20년 귀속 기한 후 신청분 지급규모는 '17~'19년 귀속 평균값으로 예상치임

참고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부부 합산)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가구 유형</th> <th colspan="3">근로장려금</th> <th rowspan="2">자녀장려금</th> </tr> <tr> <th>단독 가구</th> <th>홀벌이 가구</th> <th>맞벌이 가구</th> </tr> </thead> <tbody> <tr> <td>총소득기준금액</td> <td>2,000만 원</td> <td>3,000만 원</td> <td>3,600만 원</td> <td>4,000만 원</td> </tr> <tr> <td>최대지급액</td> <td>150만 원</td> <td>260만 원</td> <td>300만 원</td> <td>50~70만 원</td> </tr> </tbody> </table> <p>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 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p>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000만 원	3,000만 원	3,600만 원	4,000만 원	최대지급액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000만 원	3,000만 원	3,600만 원	4,000만 원														
최대지급액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	50~70만 원														
재산요건 (가구원 합산)	<p>◇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 원¹⁾ 미만 주택·토지·건축물(기준시가), 승용자동차(기준시가, 영업용 제외), 전세금²⁾, 금융자산(기준일 잔액), 유가증권(상장주식은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채권은 액면가액), 각종 회원권, 조합원 입주권(기준일까지 불입액)</p> <p>1)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1.4억 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2) (주택) Mn[간주전세금(기준시가×55%), 실제 전세금, (상가)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p>																	
가구요건	<p>◇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가구 유형,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p> <table border="1"> <tbody> <tr> <td>단독 가구</td> <td>배우자¹⁾와 부양자녀²⁾, 70세 이상 직계존속³⁾이 모두 없는 가구</td> </tr> <tr> <td>홀벌이 가구</td> <td>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td> </tr> <tr> <td>맞벌이 가구</td> <td>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td> </tr> </tbody> </table> <p>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p>	단독 가구	배우자 ¹⁾ 와 부양자녀 ²⁾ , 70세 이상 직계존속 ³⁾ 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단독 가구	배우자 ¹⁾ 와 부양자녀 ²⁾ , 70세 이상 직계존속 ³⁾ 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 제외

-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단, 전문직 근로자는 장려금 지급 대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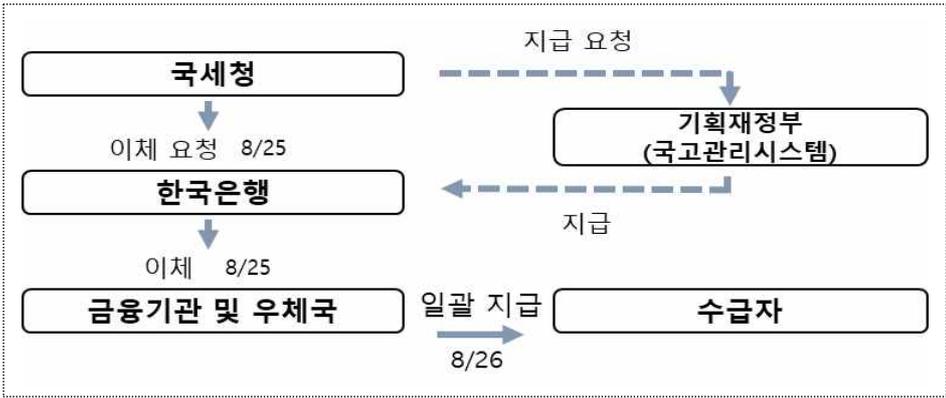
참고 4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개요

제도취지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 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2019년 귀속부터 도입)																
신청자격	◇ 근로소득만 있는 자(신청자 및 그 배우자 모두) *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정기 또는 반기에 선택하여 신청 가능 ◇ 가구원·소득·재산요건은 정기분과 동일 * 요건판단 기준일은 다름																
요건판단 기준일	◇ 반기신청 시: 소득 발생연도의 전년도 기준 반기신청 정산 및 정기신청 시: 소득 발생연도 기준 반기지급제도 요건판단 기준일('20년 귀속 예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상 반 기</th> <th>하 반 기</th> <th>반기정산·정기</th> </tr> </thead> <tbody> <tr> <td>가 구 원</td> <td>'19. 12. 31.</td> <td>'19. 12. 31.</td> <td>'20. 12. 31.</td> </tr> <tr> <td>소 득 (총급여액등)</td> <td>'19년 연간 총소득 ('20년 추정소득)</td> <td>'19년 연간 총소득 ('20년 실지소득)</td> <td>'20년 연간 총소득 ('20년 실지소득)</td> </tr> <tr> <td>재 산</td> <td>'19. 6. 1.</td> <td>'19. 6. 1.</td> <td>'20. 6. 1.</td> </tr> </tbody> </table>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반기정산·정기	가 구 원	'19. 12. 31.	'19. 12. 31.	'20. 12. 31.	소 득 (총급여액등)	'19년 연간 총소득 ('20년 추정소득)	'19년 연간 총소득 ('20년 실지소득)	'20년 연간 총소득 ('20년 실지소득)	재 산	'19. 6. 1.	'19. 6. 1.	'20. 6. 1.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반기정산·정기														
가 구 원	'19. 12. 31.	'19. 12. 31.	'20. 12. 31.														
소 득 (총급여액등)	'19년 연간 총소득 ('20년 추정소득)	'19년 연간 총소득 ('20년 실지소득)	'20년 연간 총소득 ('20년 실지소득)														
재 산	'19. 6. 1.	'19. 6. 1.	'20. 6. 1.														
지급방법	◇ 신청·지급·정산방법 - (신청) 상반기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 (지급) 연간 추정액의 35%씩 상·하반기 나누어 지급 - (정산) 연간 산정액과 기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과소 지급한 경우 추가 지급하고 과다 지급한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세무서에 즉시 고지를 요청하여 바로 납부할 수도 있음 * 지급요건 판단 기준일이 반기지급('19년 귀속)과 정산('20년 귀속) 시기에 따라 달라 지급요건 변동에 따른 환수 발생 가능성 있음 반기지급제도 신청 및 지급('20년 귀속 예시) 																

참고 5

근로·자녀장려금 대량지급시스템

배 경	<p>◇ 일일 송금건수 제한(60만 건)으로 인한 지급시차를 단축하기 위해 대량의 장려금을 1일 내에 송금 가능한 지급시스템 개발 필요</p>																				
내 용	<p>◇ (송금건수 제약) 기존의 국세환급금 지급시스템을 통한 일일 송금가능건수는 40~60만 건으로 지급에 상당한 시일 소요</p> <p>※ 연도별 장려금 지급건수 및 소요기간</p> <table border="1" data-bbox="440 669 1370 958"> <thead> <tr> <th>귀 속</th> <th>지급건수</th> <th>소요기간</th> <th>일일 지급가능건수</th> </tr> </thead> <tbody> <tr> <td>'08~'09년</td> <td>100만 건 미만</td> <td>2~3일</td> <td>40만 건</td> </tr> <tr> <td>'14~'17년</td> <td>300만 건 미만</td> <td>5~6일</td> <td>40~55만 건</td> </tr> <tr> <td>'18년</td> <td>473만 건</td> <td>10일</td> <td>60만 건</td> </tr> <tr> <td>'19년</td> <td>457만 건</td> <td>3일</td> <td>500만 건</td> </tr> </tbody> </table> <p>◇ (대량지급시스템 개발) 일일 송금건수 제한으로 발생하는 지급시차를 단축하여 1일 내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려금만 별도로 송금하는 「장려금 대량지급시스템」* 개발 * 일일 송금가능건수 : 60만 건 → 500만 건 	귀 속	지급건수	소요기간	일일 지급가능건수	'08~'09년	100만 건 미만	2~3일	40만 건	'14~'17년	300만 건 미만	5~6일	40~55만 건	'18년	473만 건	10일	60만 건	'19년	457만 건	3일	500만 건
귀 속	지급건수	소요기간	일일 지급가능건수																		
'08~'09년	100만 건 미만	2~3일	40만 건																		
'14~'17년	300만 건 미만	5~6일	40~55만 건																		
'18년	473만 건	10일	60만 건																		
'19년	457만 건	3일	500만 건																		
절 차	<p>◇ 한국은행에 전일 지급의뢰하여 당일 일괄지급 완료</p> <p> 장려금 대량지급시스템 처리절차('21년 예시) </p> 																				
추 진	<p>◇ (일괄지급) '20년 귀속 정기 신청·반기 정산분 지급('21년 8월) 시 대량지급시스템을 활용해 모든 수급자에게 일괄지급 첫 시행</p>																				